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08호
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 생활수준에 관계없이
지급하는 서울시 '보훈예우수당'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'4·19
혁명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'에서 '전상군경
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 및 공상공무원'까지 확대함으로써

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.

한편, 단서 규정은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내용 및 적용범위가 명확해야 하나, 현행 조례에서 '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'의 내용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이를 정비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